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여부

생리적무월경시 : 비보험진료

병적무월경시 ♣ 요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B0260

D5701(1780원)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삭제(고시 제2016-190호,2016.10.1시행) 삭제사유
: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임신 확인을 위한 검사 포함)의 급여 전환

가능성을 염두하여 시행되는 임신반응검사의경우 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어 비급여로 구분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Q. 외과적 질화으로 신경외과에 내워하여 수술을 하게 되는경우 수술전 기본적 검사를 시행하고 혹여 임신일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인령·성별·식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진료의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진료상 필요하여 임신반응검사를 가임기 여성에게 실시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병적무월경시 요임신반응검사의 급여

소변검사(만원)는 비보험처리하였슴

31세 환자(P:1), 2개월동안 생리없어서(루프 했다는 말은 없었슴). 소변 임신 검사후 초음파후 질경을 넣고 진찰하니 루프가 자궁입구에 걸쳐있었슴 (totally out state). 설명후 루프제거 원하여 루프제거하였고, 피검사설 명(금액까지 설명:FSH,E2,TSH, PRL,LH)후 피검사하였슴. 루프제거와 피검사는 보험처리하였고, 초음파와 임신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 요청

심평원답변(요임신검사에 대한 진료비 환수요청)

: 해당 수진자는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에서 임신확인을 위해 내원한 경우가 아니라 루프를 삽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발성 무월경으로 진단받고 시행한 요 임신반응검사이므로 요양급여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무월경에대한 피검사와 같이 시행되것으로 병적무월경검사로 보여짐